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미소지의선서 (□미소지 ☞소지 □기타)						
	담당 부서	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김진원 선임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·개발망에 위치한 '소스코드관리서버'에서 '내부 운영망'의 '형상관리서버'로 소스코드를 암호화하여 전송 (HTTPS)하는 것이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 ① '소스코드관리서버'에서 '형상관리서버'로 직접 전송 ② '소스코드관리서버'에서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해 '형상관리서버'로 전송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경우 대해	<ul> <li>□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·개발망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예외에 해당하나 연구·개발 목적 이외의 내부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므로,</li> <li>○ 전산실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은 연구·개발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1항제5호).</li> <li>○ 따라서, 요청대상행위 ①과 같이 연구·개발망의 '소스코드관리서버'에서 '내부 운영망'의 '형상관리시스템'로 직접 소스코드를 전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□ 다만, 업무상 불가피하게 DMZ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예외적용이 가능하나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2항제2호나목),</li> <li>○ 소스코드가 저장된 DMZ에 위치한 서버에서 내부 형상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은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(비조치의견서 190058).</li> <li>○ 따라서, 요청대상행위 ②와 같이 소스코드를 연구·개발망에서 DMZ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'내부 운영망'의 '형상관리서버'으로 전송하는 것은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판단됩니다.</li> </ul>				

- **\*\*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

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